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방 송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총리 (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공영방송 이사·사장 선임절차 개선 및 방송의 보도·편성 자율성 제고를 위한 「방송법」 개정('25. 8. 26. 공포·시행)에 따라, 이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편성위원회 등 규정 위반 시 과태료 기준 신설(안 별표4)

- ‘편성책임자 미선임’, ‘편성규약 미준수’, ‘편성위원회 심의·의결 사항 미이행’ 및 ‘추천을 받지 아니한 시청자위원 위촉’ 등에 대해 과태료 기준 금액 설정

나.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방송사(안 제64조제6항)

- 기존 시청자위원회 운영 방송사업자(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라디오 방송사업자 및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)를 대통령령으로 추가

다. ‘정보공개 의무 방송사업자’ 인용조문 변경(안 제65조제1항)

-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공개 대상 의무사업자의 인용조문을 개정 「방송법」에 따른 관련 조문으로 변경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법 제87조제1항제8호에서 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다만, 법 제8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청자위원회를 둔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청자위원회를 설치 한 것으로 볼 수 있다.

1.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
2.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

제65조제1항의 “같은 조 제1항”을 “제87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별표 4 제2호나목(종전의 가목) 근거 법조문란 중 “법 제108조제1항제1호”를 “법 제108조제1항제1호나”로 하고, 같은 호에 “가”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편성위원회의 제청 없이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거나(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)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108조제1항제1호가	1,000
--	----------------	-------

별표 4 제2호의 “다”목, “라”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108조제1항제1호의2	1,000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	-------

라. 법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편성위원회의 심의 ·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108조제1항제1호의3	1,000
--	-----------------	-------

별표 4 제2호의 “토”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토.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시 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 경우	법 제108조제1항제21호의2	1,000
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4조(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~ ⑤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64조(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법 제87조제1항제8호에서 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다만, 법 제8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청자위원회를 둔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청자위원회를 설치 한 것으로 볼 수 있다. 1.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2.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
제65조(정보의 공개) ①법 제90조 제5항에 따라 <u>같은 조 제1항</u>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(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방송사업자는 제외하며, 이하 이 조에서 “정보공개 의무 방송사업자”라 한다)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려는 시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	제65조(정보의 공개) ①----- ----- <u>제87조제1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정보공개 신청서를 정보공개의
무 방송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
한다.

1. · 2. (생 략)

② ~ ⑤ (생 략)

(별표4)

위 반 행 위	근거 법 조문	과태료 금액 (단위만원)
<신설>		
가.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방송편성책임자의 성명을 방 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지 않은 경우	법 제108조 제1항 제1호	500
<신설>		
<신설>		
나. ~ 오. (생략)		
<신설>		
조. ~ 루. (생략)		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(별표4)

위 반 행 위	근거 법 조문	과태료 금액 (단위만원)
가.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편성위원회의 제청 없이 방 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거나 (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해 당하는 방송사업자에 한정하 다)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 지 아니한 경우	법 제108조 제1항 제1호가	1,000
나.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방송편성책임자의 성명을 방 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지 않은 경우	법 제108조 제1항 제1호나	500
다.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지 아 니한 경우	법 제108조 제1항 제1호의2	1,000
라. 법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편성위원회의 심의·의결사항 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108조 제1항 제1호의3	1,000
마. ~ 코. (생략)		
토.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추천 을 받지 아니하고 시청자위원 회의 위원을 위촉한 경우	법 제108조 제1항 제21호의2	1,000
포. ~ 우. (생략)		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	
연 락 처	(02) 2110 - 1415